

##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대학 운영에 대한 의견 제안을 장려하고, 참여·소통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의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과 구성원별 대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절차 및 방법)** ①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부서는 대학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들에게 안내한다.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2.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전략
3. 학사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조직 및 운영
5. 행정부서의 주요 정책 및 주요 사업성과
6. 교육 관련 학사 정보와 교직원 및 학생복지 사항
7.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교육과 관련된 사항 등

② 대학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규정
2.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전략 :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규정, 학사 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
3. 학사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 학사 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

③ 대학 구성원 대표 단체는 대학 운영의 주요사항 및 민원사항을 공문, 게시글, 부서 면담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담당 부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원 대표 단체 : 기획처 기획예산팀, 교무처 교무팀
2. 직원, 직원 대표 단체 : 사무처 총무팀
3. 학생, 학생 대표 단체 : 학생처 학생팀, 교무처 학사팀

④ 대학 구성원은 대학 운영 개선 제안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접수 부서는 [별첨 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4항에 의해 접수된 사안 중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상생협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1.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사항
2. 적립금의 인출이 필요한 사항
3. 교무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4.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5.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⑥ 제3항에 의해 접수된 사안 중 대학의 행정제도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행위 또는 고충사항에 해당하는 민원과 「호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는 「호서대학교 민원사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4조 (시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며, 학년도당 1회 이상 상생협의위원회를 개최 및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현황을 점검한다.

- 제5조 (상생협의위원회)** ① 구성원의 참여 및 소통 활동과 관련된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확대한 상생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장 직속으로 두어, 주요 제안사항에 대해 심의 및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2인
  3.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수 2인
  3.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2인
  4.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동문 1인, 학부모 1인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구성원 참여·소통 처리 절차

